

청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30897(본소), 2020가단8753(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A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561,293원 및 그 중 19,271,453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7. 27.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A, B이 2019. 2.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B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2. 접수 제24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A, C이 2019. 2.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5. 접수 제257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D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19. 3. 4. 신용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24. 2.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2019. 5. 10. 신용보증원금 500만 원, 보증기한 2024. 5. 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D조합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로부터 2019. 3. 4. 1,500만 원, 2019. 5. 4.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2019. 6. 5. 피고 A이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2. 4. D조합에 1,9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28,547원은 회수하였으며, 289,84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9. 2. 21. 부친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2. 접수 제244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은 2019. 2. 21. 모친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15. 접수 제257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5,735,6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383,412,031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가액(원)	채권자	가액
충주시 E 대 645m ²	183,735,600	D조합	20,000,000
위 지상 건물		F은행	37,615,000
충주시 G 답 1,496m ²		H(주)	3,320,000
충주시 I 대 1,614m ²		J	11,100,000
충주시 K에 있는 L건물 M동 N호	51,000,000	O은행	66,957,000
충북 진천군 P아파트 Q호	121,000,000	R조합	122,229,000
		S	20,000,000
		T	11,191,031
		U	25,000,000
		V	26,000,000
		W	40,000,000
합계	355,735,600		383,412,0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9,561,293원 및 그 중 원금 19,271,4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7. 2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는 피고 A이 과도한 채무 및 압류로 인하여 햇살론 대출보증 대상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A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D조합와 공모하여, 제천시 소재 X아파트 등을 분양계약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고 속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D조합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이 불법대출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9. 3. 4. 및 2019. 5. 10.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 A이 피고 B, C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19. 6. 5. 피고 A이 위 대출계약의 원리금을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12. 4.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피고 A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 C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피고 A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은 피고 A의 부모인 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피고 A에게 사업자금과 아파트 구입자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면 피고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피고들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하게 유인하고,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고 속여, 피고 A으로 하여금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을 증여받고,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 B,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D조합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이 불법대출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별 지

① 충주시 대 645㎡

② 충주시

(도로명주소) 충주시

적벽돌솔라브지붕단층주택 81.64㎡

부속건물

흙벽돌조스레트지붕농업생산시설 42.2㎡

흙벽돌조스레트지붕농업생산시설 15㎡

③ 충주시 답 1496㎡

④ 충주시 대 1614㎡

⑤ 충주시 동

[도로명주소] 충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28.3067㎡

대지권의 표시 충주시 답 291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비율 2911분의 36.9755